

유형자산 문의

Q 내용연수 4년으로, 17년 9월 취득 자산을 정률법으로 관리하다가 21년1월1일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21년1월부터 정액법 감가상각 4년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21년9월(17년기준 4년)에 상각이 끝나야 맞는건가요?

A 감가상각방법변경시 잔존내용연수는 기존내용연수 48월에서 경과내용연수 차감한 나머지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므로, 21년 9월에 상각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임원 개인 차량 사용

Q 임원용 법인 차량이 아직 출고되지 않아, 입고 이전까지(입사일~법인차량 입고일) 임원의 개인 차량(개인용 보험 가입)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임원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 방법과 업무용차량으로 비용 인정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류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6【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매출취소 문의

Q 당사는 A사로 매출했던 아이템을 20년 11월, 21년 5월에 돌려받았고, 당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금은 받지않고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출 취소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22년 1월에 매출 취소 및 부가세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수출물품의 하자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차감하여 신고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2020년2기확정, 2021년1기확정시기에 반입되었으므로 해당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기간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당사는 면세법인입니다 (출판사) 상대방은 일반법인입니다.

저희는 항상 책을 판매해와서 면세계산서만 발행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저희 책을 인용하여 받는 비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문제없는 건가요?

A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관련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가 아닌 면세로 하여 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